

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

제정 2015. 11. 18.

일부개정 2020. 12. 31.

일부개정 2023. 9. 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민법」과 「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의료, 한약의 육성,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-3(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)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육성·지원사업
2. 지역 특화 한의약 소재의 수집·증식·보존 및 보급 사업
3. 지역 특화 한의약 교육 및 홍보사업
4. 한방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
5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(대행)사업과 용역사업
6.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2장 임 원

제5조(임원)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명
2. 원장 1명
3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, 원장 포함)
4. 감사 2명

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, 이사장·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

제6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연구원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연구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
 2.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2인
 3. 제주특별자치도의회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 1인
-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1. 한의약 분야 전문가
 2. 한의약 관련 단체 임원
 3.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4.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5. 재단의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분야의 전문가
- ③ 연구원의 임원(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)·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(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3장 연구원 임원 선임 등

제7조(이사) ① 연구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이사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
1.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 업무 담당실·국장<개정 2023. 9. 5.>
2.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
3. 제주특별자치도 한방·바이오 산업 업무 담당과장<개정 2020. 12. 31.>
4. 연구원 원장
5.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5인 이상

② 추천위원회는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 명의로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,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이사후보로 도지사에게 추천한다.

④ 이사는 정관 제1조에서 정한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한의약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
2. 한의약 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
3. 한약재 재배농가 단체 임원
4.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⑦ 이사 결원시 후임자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감사) ① 감사는 선임직 감사로만 운영한다.

- ② 선임직 감사는 재무·회계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회(사외)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9조(원장) ① 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며, 원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 명의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-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원장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(이하 “제주도”라고 한다)와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장의 공개모집을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원장후보로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원장은 정관 제1조에서 정한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한의약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
 2. 한의약 분야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 3.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15년 이상 한의원 운영 경력이 있는 자
 4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한의약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
 5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-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연구원은 원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

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제주특별자치도·도의회 및 연구원 이사회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원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- ⑨ 원장의 결원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의 실제 상 선임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23. 9. 5.>

1. 미성년자
 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,

제11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1. 연구원의 재산 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
 2.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

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

4.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
요구

5. 그 밖에 연구원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
참석하여 의견을 진술

④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,
연구원의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
항을 처리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
한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
할 수 있다.

1.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3.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5. 「민법」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
한 규칙」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
니한 때

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
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.

제13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
호선하되 그 전까지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장 이사회 운영

제1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원장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3.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<삭제 2020. 12. 31.>

⑥ <삭제 2020. 12. 31.>

제1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
3.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4.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
5.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7조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<개정 2020. 12. 31.>>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범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18조(이사회의 의사의 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는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0. 12. 31.>>

③ 이사장은 제2항의 서면 의사의 결정 사항을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31.>>

제19조(이사회의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 사항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가운데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이사가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장 예산과 회계

제20조(재산의 구분)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(기탁금) 중 일부 재산

2.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③ 법인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“별지”와 같다.

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과 기업, 개인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한다.

제21조(재산의 관리) ① 연구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연구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원은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2조(재원) 연구원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출연금, 보조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제23조(회계연도) 연구원의 회계 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4조(사업계획·결산 등) ① 연구원은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

또한 같다.

② 연구원은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,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26조(임원의 보수) ① 연구원은 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되, 그 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연구원은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조직과 정원

제27조(조직 등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

③ 연구원의 직제, 정원, 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연구원의 직제 및 보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공무원의 파견)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당해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수의 사업 범위 및 내용

제29조(수의 사업)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의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0조(수의 사업의 기금 관리) 수의 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원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1조(정관의 변경)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2조(해산)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33조(잔여재산의 처리) 연구원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

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,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재산을 출연한 기관 또는 출연한 기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한다.

제34조(청산 종결의 신고) 청산인이 연구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「민법」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35조(공고 사항 및 방법) 연구원의 설립·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.

제36조(관련 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한다.

제37조(준용 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및 「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본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 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②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(설립자)

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·의결로 보며, 연구원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(추천)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는 법인설립 등기 일로부터 시작한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발 기 인	김 태 윤
발 기 인	김 성 언
발 기 인	문 성 종
발 기 인	안 동 우
발 기 인	임 봉 수
발 기 인	이 은 희

부칙(2020. 12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 9. 5.)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설립당시의 기본재산

구 분	종 류	내 역	금 액	비 고
기본재산	현 금	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	50,000,000원	

[별지 2]

설립 당시의 발기인 명부

연 번	직 위	성 명	주 요 약력
1	국 장	이 은 희	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
2	의 장	김 태 윤	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
3	회 장	김 성 언	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장
4	교 수	문 성 종	한라대 관광경영과 교수
5	전)도의원	안 동 우	전)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(7,8,9대)
6	연구교수	임 봉 수	제주대학교 수산백신연구센터 연구교수

[붙임] <개정 2020. 12. 31.>

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
법인이 사용할 인장

1. 이사장인



2. 직인



3. 원장의 인



4. 계인

